

의안번호	2211655
의 퇴 인	윤준병의원
회 답 일	2025.11.7.
추계번호	25B3891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는 <u>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된 산지</u> 로 함. 다만,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는 제외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13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u>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u> 로 함. 다만,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는 제외함(제1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본문 참조
2	안 제13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정보 취약계층 등 제도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임업인에 대해서도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급대상 산지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법은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을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¹⁾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로 정하고 있음

- 산림청에 따르면, WTO 농업협정의 허용보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고정된 기간을 설정하여, 임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산물생산업으로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만 해당됨

- 개정안은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을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로 개정하여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

[표 1] 임업경영체 등록현황(2022.9.30.까지)

(단위: 건, ha)

계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겸업 (임산물생산업+육림업)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44,442	134,793	39,311	72,724	3,285	35,885	1,846	26,184

주: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을 겸업하는 임업경영체 면적의 구성은 임산물생산업 6,564ha, 육림업 19,620ha임

자료:산림청

[표 2]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 현황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대상면적 (천 ha)	지급대상 (천 건)	지급액 (백만원)	대상면적 (천 ha)	지급대상 (천 건)	지급액 (백만원)	대상면적 (천 ha)	지급대상 (천 건)	지급액 (백만원)
합계	56.8	21	46,889	62.3	20	48,923	64.9	20	50,278
· 임산물생산업 직불제	46.0	20	40,883	48.3	19	40,938	48.5	19	40,554
- 소규모임가 직불금(가구)	0.2	1	763	0.2	1	713	0.2	1	648
- 면적 직불금(면적)	45.8	19	40,120	48.1	18	40,225	48.3	18	39,906
· 육림업 직불제(면적)	10.8	1	6,006	14.0	1	7,985	16.4	1	9,724

자료: 산림청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개정안에 따라 실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되었음에도 기간 내에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지 못한 산지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므로,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확대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시점에서 실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되었음에도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아니한 산지의 규모, 해당 산지의 임업인등의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및 직접지불금 신청 여부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

[참고자료] 임업직불제 자격 요건

(자료: 산림청)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 임업경영체(임산물생산업) 등록 산지 * (지급 상한) 임업인: 30ha, 법인: 50ha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 임업경영체(육림업) 등록 산지 * (지급 상한) 임업인: 30ha, 법인: 50ha
■ 소규모임가 - 임가 대상면적의 합 0.1~0.5ha 이하 -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보유산지의 합 1.55ha 미만 - 임가 대상자 모두 농촌거주, 영농종사 직전 계속 3년 이상 - 임가 구성원 각각 농외소득 2천만원 미만 - 임가 구성원 농외소득 합이 4,500만원 미만 - 임가 내 모든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 법인 및 소농직불금, 농업면적직불금 지급받은 자 및 구성원 제외 ■ 면적 - 소규모임가직불금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급등록 직전 1년 이상(연 60일 이상) 대상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종사자로서, (임업인) 0.1ha 이상이면서 연 120만원 판매액 (법인) 5ha 이상이면서 연 4,500만원 이상 판매액	■ 육림업 - 3~30ha(법인 10~50ha) -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 * 등록신청연도 직전 10년 이내 조림·숲가꾸기 등 육림 실적

□ 지급제외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산지	■ 국유림 및 공유림 ■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15조2 제4항제4호 및 제7호 일부 제외) ■ 주거·상업·공업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 신청한 연도에 농업분야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 휴경산지(임산물 재배 휴경, 벌채 후 재조림 미이행) ■ 농촌지역외 거주자(주업 조건 해당자는 지급) ■ 일시적인 채취행위에 의한 임산물생산지(임산물생산업 한정) ■ 법정제한지역 등 육림업이 어려운 산지(육림업 한정)	
대상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07년 전국가구평균소득 3,674만원('08년에 '06년 수급자 중 공무원 등 부정수급 사회문제) ■ 농업 소농직불금 수급자, 구성원 (신청일의 직전연도에 한함) ■ 농업 면적직불금 면적과의 합 상한 적용 ■ 무단점유자 (임차가능, 시행 후 분할 임차 불가)	■ 산지 소재 농촌 외 거주자(주업 조건 해당자는 지급) ■ 임야 소유자가 아닌 자(소유자는 아니나 임목을 등기한 경우는 가능, 임차불가)